

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 개정안

의안 번호	151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2. 1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공영주차장이 26개소에서 33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위탁 운영에 따른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「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」 개정을 통해 정원 조정을 하기 전 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: 「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」 별표2 개정

가. 정원총수: 30명 → 31명(증1)

나. 직급별 정원조정

1) 임원: 1명(변동없음)

2) 일반직: 16명 → 17명(증1)

○ 7급: 7명 → 8명(증1)

3) 업무직(무기계약직): 13명(변동없음)

3. 근거법규: 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7조제3항

4.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						개 정 안												
<별표 2>											<별표 2>												
정 원 표											정 원 표												
구분	계	임원	일반직							업무직	합계	구분	계	임원	일반직							업무직	합계
			계	3급		4급	5급	6급	7급						계	3급		4급	5급	6급	7급		
				소계	행정	행정·기술	행정·기술	행정·기술	행정·기술							소계	행정	행정·기술	행정·기술	행정·기술	행정·기술		
계	30	1	16	2	1	1	2	2	3	7	13	계	31	1	17	2	1	1	2	2	3	8	13
경영사업팀	9	1	5	1	1		1	1	1	1	3	경영사업팀	9	1	5	1	1		1	1	1	1	3
시설관리팀	21		11	1		1	1	1	2	6	10	시설관리팀	22		12	1		1	1	1	2	7	10

근 거 법 규

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27조(감독)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.

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2. 인사규정, 임직원의 보수규정(연봉제규정, 복리후생규정 포함) 및 퇴직금규정
(명예퇴직규정 포함)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에 관하여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